

제 안 설 명 서

[영주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증개정조례(안)]

영 주 시

영주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자급조례(안)개정조례(안)

의 안	190
번 호	

제출년월일 : 2000. 11.

제 출 자 : 영 주 시 장

1. 개정 이유

관내 거주하는 노점상 중 법질서 확립에 호응하여 기존 노점상을 철거한 후 생계를 위하여 전업하는 영세노점상들에게 현행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여 신속하게 응자금이자의 일부를 보전함으로써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전업자금 응자신청을 읍면동장의 추천을 거쳐 시에 신청 하던 것을 시장에게 직접 신청토록함.(안 제2조 및 별지서식)
- 나. 신청서류를 간소화 함(안 제3조)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영주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영주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중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및 동조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조의 제목 “융자 추천신청”을 “융자 신청”으로 하고, 동조 제1항중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를 “[별지서식]의 융자신청서를”로 하며, 동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융자 신청은 1인 1회에 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서식】”으로 하고, 동서식의 제목 “융자추천신청서”를 “융자신청서”로 하며, “읍·면·동장 ①”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영주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증개정조례(안)】

현 行	개 정 안																
<p>제2조(대상) ①보조금의 지급대상자는 관 내에 거주한 노점상중 법질서 확립에 호응하여 철거한 영세노점상으로 유희· 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생계전업을 위한 융자금을 시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서 지급받는 자로 한다.</p> <p>②유희·면·동장이 융자금 지원대상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시가 배정한 융자금지원액 한도내에서 하여야 한다.</p>	<p>제2조(대상) ① <u><삭제></u> <u><삭제></u></p>																
<p>제3조(융자 추천신청) ①융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융자 추천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p> <p>②융자의 추천신청은 1인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p>	<p>제3조(융자 신청) ① <u>【별지 서식】 의 융자신청서를</u> <u>1. <삭제></u> <u>2. <삭제></u> <u>②융자 신청은 1인 1회에 한한다.</u></p>																
<p>【별지제1호서식】 융자추천신청서 신청인 ~ 사업계획<생략></p> <p>위와 같이 노점상 전업생계자금융자를 받고자 신청합니다.</p> <table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r> <td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td> <td style="text-align: right;">.....</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인)</td> <td style="text-align: right;">.....</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유희·면·동장 (인)</td> <td style="text-align: right;">.....</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영주시장 귀하</td> <td style="text-align: right;">..... <u><삭제></u></td> </tr> </table>	년 월 일	신청인 (인)	유희·면·동장 (인)	영주시장 귀하 <u><삭제></u>	<p>【별지서식】 융자신청서 신청인 ~ 사업계획<현행과 같음></p> <table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r> <td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td> <td style="text-align: right;">.....</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인)</td> <td style="text-align: right;">.....</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유희·면·동장 (인)</td> <td style="text-align: right;">.....</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영주시장 귀하</td> <td style="text-align: right;">..... <u><삭제></u></td> </tr> </table>	년 월 일	신청인 (인)	유희·면·동장 (인)	영주시장 귀하 <u><삭제></u>
년 월 일																
신청인 (인)																
유희·면·동장 (인)																
영주시장 귀하 <u><삭제></u>																
년 월 일																
신청인 (인)																
유희·면·동장 (인)																
영주시장 귀하 <u><삭제></u>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의 안

- 의안번호 : 제170호
- 의 안 명 : 영주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 해당부서 : 산업건설국 건설과

2. 제안이유

관내 거주하는 노점상 중 법질서 확립에 호응하여 기존 노점상을 철거한 후 생계를 위하여 전업하는 영세노점상들에게 현행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여 신속하게 융자금이자의 일부를 보전함으로써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가. 전업자금 융자신청을 읍면동장의 추천을 거쳐 시에 신청하던 것을 시장에게 직접 신청토록 함. (안 제2조 및 별지 제1호서식)
- 나. 신청서류를 간소화 함. (안 제3조)

4.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 전업자금 융자신청시 경유절차 없이 직접 시장에게 신청토록 하고 이에 따른 관계조문 등을 정비하며(안 제2조 및 별지서식)
- 융자신청 구비서류와 관련하여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안 제3조)
- 시달된 규제개혁 모델적용지침(2000. 4. 3.)에 의거 행정규제 조항을 정비하여 신청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타당한 개정안으로 사료됨.

2000. 12.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호섭